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1049호(號) 1930년(昭和 5) 7월 3일 목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97호(號)

1927(昭和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7호(號)(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1930(昭和 5)년 7월 10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30(昭和 5)년 7월 3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21조(條)의4」를 「제21조(條)의5」로, 「제21조(條)3」을 「제21조(條)의4」로 개정(改正)하고, 제21조(條)의2의 다음에 아래[左]의 1조(條)를 추가(追加)함.

제21조(條)의3 제21조(條)의2의 특정임률구간(特定賃率區間)과 기타(其他)의 구간(區間)에 걸쳐 승차(乘車)하는 여객(旅客)에 대한 운임(運賃)은 특정임률(特定賃率)과 특정운임(特定運賃)이 정(定)해지지 아니한 구간(區間)의 보통여객운임(普通旅客運賃)과의 병산액(併算額)으로 함.

주(註)1 본조(本條)의 경우, 특정운임(特定運賃)이 정(定)해지지 아니한 구간(區間)의 운임이 제20조(條)의 최저운임(最低運賃)에 달(達)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同) 구간운임(區間運賃)은 최저운임(最低運賃)을 수수(收受)함.

2 본(本) 운임(運賃)에 대하여 할인(割引)을 할 경우는 특정운임(特定運賃)이 정(定)해지지 아니한 구간(區間)의 운임(運賃)에 대하여만 이것을 함.

3 학생정기승차권(學生定期乘車券)에 대한 운임(運賃)은 승차킬로미터수(乘車料程)를 통산(通算)하여 제25조(條)에 의(依)하여 산정(算定)함.

제21조(條)의5 중(中) 「제21조(條)의3」을 「제21조(條)의4」로 개정(改正)하고, 아래[左]의 주(註)를 추가(追加)함.

주(註) 제21조(條)의3의 운임(運賃)에 의(依)하여 발매(發賣)한 승차권(乘車券) 소지자(所持者)는 도중(途中) 하차(下車)를 함을 득(得)함.

제173조(條)제6호(號) 중(中) 「통상소하물(通常小荷物)」의 아래[下]에 「 및 제172호(號)의2의 생사(生絲), 생사제품(生絲製品)」을 추가(追加)함.